

주주 여러분께

신주발행 일정 변경 공고

2017년 10월 19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 일정의 변경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8,130,100주 (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: 500원)
2. 신주의 발행방법 :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
3. 자금조달의 목적 : 시설자금, 운영자금 및 기타자금
4. 신주의 발행가액 : (구)‘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’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한다. 이하 모든 경우에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.
 - (1) 1차 발행가액 산정 : 신주배정기준일(2017년 9월 29일)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(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, 이하 동일함),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증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증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7%를 적용,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 13,400원으로 한다.

▶ 1차 발행가액 = [기준주가 X (1 - 할인율)] / [1 + (증자비율 X 할인율)]
 - (2) 2차 발행가액 산정 : 구주주 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증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증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7%의 할인율을 적용,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한다.

▶ 2차 발행가액 = 기준주가 X (1 - 할인율)
 - (3) 확정 발행가액 산정 :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. 다만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

가로 하여 40%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%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.

5. 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17년 09월 29일

6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17년 10월 10일 ~ 2017년 10월 13일

7. 신주의 배정방법

(1) 우리사주조합 : 전체 발행 예정 신주의 20%인 1,626,020주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한다.

(2) 구주주 :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구주주(이하 “구주주”)에게 구주주 소유 주식 1주당 0.3911554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(단, 1주 미만은 절사함)만큼 배정한다. 다만,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.

(3) 초과청약 :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이후 실권주가 발행하는 경우, 실권주를 구주주(신주인수권 증서 보유자)에게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, 다만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(단, 초과청약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% 배정함).

가. 청약한도 주식수 =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+ 초과청약 한도주식수

나.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=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

다.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=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(20%)

(4) 최종 구주주 청약(초과청약 포함) 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한다.

8. 신주의 청약기간

(1) 우리사주조합 청약 : 2017년 12월 21일 (1일간)

(2) 구주주 청약 : 2017년 12월 21일 ~ 2017년 12월 22일 (2일간)

9. 납입기일 : 2017년 12월 27일

10. 납입처 : 신한은행 역삼동기업금융센터

11. 배당기산일 : 2017년 01월 01일

12. 청약취급처

(1) 우리사주조합 청약 : 신한금융투자(주)의 본·지점

(2) 구주주 청약

- 실질주주 :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신한금융투자(주)의 본·지점
- 명부주주 : 신한금융투자(주)의 본·지점

13.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

- (1)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,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한다.
- (2)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하며,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(KRX)에 상장될 예정이다.
- (3)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: 2017년 12월 06일 ~ 2017년 12월 12일 (예정)
- (4)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, 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한다.

14. 신주권 교부예정일 : 2018년 01월 08일

- 단, 유관기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15. 신주권 상장예정일 : 2018년 01월 09일

16. 주권교부처 : 명의개서대행기관(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)

17. 기타사항

- (1)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.
- (2)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.
- (3)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.
- (4)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.
- (5) 기타 본 건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에서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한다.

끝.